

##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 개정이유

- 수수료현실화 추진계획에 따라 원가보상율 80% 미만인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 재조정과 법령 개정등으로 폐지하여야 할 종목의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별표1] 의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가. 수수료 요액에 대하여 동과 읍·면의 구분을 폐지하여 단일화하고  
나. 원가보상율 80%미만인 수수료 종목에 대한 요율의 재조정과(50종목)  
다. 업무폐지 또는 법령상 수수료규정 폐지로 인한 종목 삭제와(53종목)  
라. 법령개정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임. (19종목)

- (1) 내수면어업면허등 3종목(내수면어업법 관련)
- (2) 공연장업등록등 2종목(공연법 관련)
- (3) 종합유원시설업허가등 6종목(관광진흥법 관련)
- (4)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허가등 6종목(하천법 관련)
- (5) 세척제 제조업신고등 2종목(공중위생법 관련)

## □ 검토의견

○ 원가에 못 미치는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중 요율 조정과 종목 삭제 및 신설코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실화에 따른 종목 요율 조정 : 50종목 (존치 15종목)

법령개정등에 따른 종목정비 : 삭제 53종목, 신설 19종목등은

경기도 평균 원가분석액과 다른 시·군의 요율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법령적합성이나 내용타당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